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에 따른 사회서비스 개발

목차

- I. 개인예산제 추진 사항
- II.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 III. 정책 제언

개인예산제의 핵심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설계의 유연성

- ▶ 개인예산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별적으로 평가한 이용자 욕구에 기초하여 예산 할당을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집행
 - 장애인 분야의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를 일정액 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
 - 개인예산제의 전제조건은 욕구조사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에서 서비스 구매자로서 소비의 권리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
- ▶ 현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시를 담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
 - 2023년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4년부터 시범사업, 입법추진 등이 예정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사회서비스

- ▶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적용 가능한 사회서비스는 이용자 지원 방식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대표적
 - 모의적용에서 개인별 급여량, 사업 범위, 지원체계 등을 검토 중
- ▶ 그러나 개인예산제 시행에 대해 장애인복지 학계와 현장은 우려의 목소리
 - 예산의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
 - 서비스 방식 등에서 시각장애인 및 소수장애인의 요구 반영이 부족
 - 또한 제공기관 부족으로 필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

정책 제언

- ▶ 서비스의 유형과 범위의 확대
- ▶ 서비스 선택 과정과 지원 전달체계 진단
- ▶ 서비스 품질 보증 및 개선 방안 마련



9 772982 554000
ISSN 2982-5547

I. 개인예산제 추진 사항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 예산설계 및 사용의 자기주도성 강조

장애계 중심이던 개인예산제 논의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빠르게 정책화 중

▶ 장애인 개인예산제 정의와 의미

- 개인예산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별적으로 평가한 이용자 욕구에 기초하여 예산 할당을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이용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설계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개별유연화(personalisation)에 입각한 제도¹⁾
- 국가마다 제도의 형태는 다양하나 공통된 요소로 예산 설계와 사용의 자기주도성 강조
- 장애인 분야의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를 일정액 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음²⁾
-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

〈표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개인예산제

구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개인예산제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서비스 유형	<p>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p> <p>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목욕제공</p> <p>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제공</p>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등 서비스 구매 또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특수화동역사 등)을 선택해 활동 지원을 받음
차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중개 기관에 일괄적으로 지급, 장애인이 직접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음	장애인 스스로 결정주체가 되어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 서비스 이용자가 정해진 범위 내 예산을 활동보조사를 고용하거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강조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주체성, 자기결정이 강조되고, 장애인 임파워먼트(권한부여) 실천이 중시

*자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icalservice.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참고

▶ 보건복지부의 계획 및 추진경과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³⁾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시가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음
- 이전까지 장애계를 중심으로 국내 도입 논의를 이어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급격한 정책화가 진행중에 있음
-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공약 발표 이후 국정과제에 반영

1) 이현나 외(2021). 『개인예산제 운영 모형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보건복지부(2023).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사회,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약속입니다". 보도자료(2023. 3. 9.).

3) 관계부처합동(2023).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23~2027)』.

I. 개인예산제 추진 사항

정부는 스웨덴의 개인예산제를 벤치마킹한 시범사업 추진 중

-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 [2023년]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
- [2024~2025년] 1, 2차년도 시범사업 및 입법추진 등
- [2026년] 본 사업 추진 예정

▶ 정부의 시범사업 모형 : 스웨덴의 개인예산제를 벤치마킹

- 정부가 시범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는 스웨덴의 개인예산제로서 적용범위와 대상, 전달체계 측면을 벤치마킹함
 -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를 사업의 대상으로 공공(지자체)과 민간(영리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보험 또는 지방재정(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유사함

〈표 2〉 국가별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 특성

	영국	독일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적용범위	사회적돌봄과 지원	현물로 지원되던 서비스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국가장애보장제도)	활동보조제도(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법)	사회지원법, 장기요양법(위주 서술), 의료보험, 아동법
할당 (대상)	- 16세 이상 - 발달장애인 포함 - 소득수준 제한 없음	- 연령, 장애유형, 소득수준 제한 없음 - 시설거주자 포함	- 65세 이하(단, 65세 이전 서비스 진입 시 계속 이용 가능) - 소득, 장애유형 제한 없음	- 65세 이하 (단, 65세 이전 서비스 진입 시 계속 이용 가능) - 노인성질환자 제외	- Wlz(사회지원법): 중증 치매환자, 중증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만성 정신 질환자 - Wmo(장기요양법):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지역마다 차이
급여	- 현금+현물 - 의료서비스 이용비용 제외	- 현금+현물 - 단, 돌봄서비스는 바우처로 지급	- 현금+현물 - 이용자의 장애와 관련없는 예산, 메디케어 서비스 등 이용 불가	- 현금+현물	- 현금(Pgb)+현물 - 의료서비스 이용 비용 제외
전달체계	- 직접지불(현금 급여), 관리형예산제, 개인서비스 기금, 혼합방식 운영	- 제공기관 관리방식, 직접 고용 방식 - 신청→필요 확정→목표 합의→운영	- 기관 관리 모형, 플랜매니저관리 모형, 자기관리 모형(현금급여), 혼합모형	- 지자체 서비스 이용, 영리기관 서비스 이용, 제공인력 직접 고용, 이용자 조합을 통한 집합적 고용	- 현금(Pgb), 현물방식 - 현금(Pgb) 방식은 개인이 아닌 사회보험은행 계좌로 급여 지급
재정 (How, Who, 본인부담 유무)	- 조세+기금 - 지방정부+중앙 정부 교부금 - 자산결과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	- 사회보험방식 운영 - 이용자 사회보험료 부담	- 일반조세+기금 - 연방정부+주정부 - 본인부담금 없음	- 사회보험 또는 지방 재정 - 본인부담금 없음	- 사회보험 방식 운영 - 본인부담금 있음

* 자료 : 이한나·김동기·김용진·전지혜(2020). "한국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49, pp 83-118.

I. 개인예산제 추진 사항

모의적용은 전국 4개 지역에서 “급여유연화 모델”과 “제공인력 활용 모델”을 각기 적용

-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운영하여 이용 현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소요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 추진
 - 1단계(2025년)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주간·방과후 활동 등 유사 돌봄서비스 간 탄력적 수용 가능한 바우처 도입
 - 2단계(2026년)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조사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총량을 결정한 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이해 구조를 마련
- 모의적용을 실시하고 시범사업까지는 2023년부터 2024년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모의적용 모델은 “급여 유연화 모델”과 “제공인력 활용 모델” 두 가지임. 궁극적으로는 유연성을 확대한 활동지원제도를 기본으로 사회서비스까지 통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모의적용을 위해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적용 대상을 모집, 4개 지역을 선정함
 - 서울시 마포구, 충남 예산군, 세종시, 경기도 김포시 등이 선정되었으며 모의적용 모델을 달리하여 적용함
 - 시군별 120명의 장애인 대상자를 목표로 하였으나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태

〈표 3〉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델비교

구분	급여유연화 모델	제공인력 활용 모델
지역	서울시 마포구(대도시), 충남 예산군(농어촌)	세종시, 경기도 김포시 (중소도시)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일상, 사회활동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구매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에게 전체 활동지원 급여 중 최대 10% 내에서 사후정산	활동지원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에게 전체 활동지원 급여 중 지자체별 최대 20% 내에서 이용자가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 서비스를 받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관리
서비스 비용	활동지원 평균 급여량 월 202만원 중 10% (20만원)	활동지원급여 20% 이내 시간당 서비스 단가 (1만5,570원)의 2배이내 단가 인상은 사용시간을 줄여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계약으로 결정
지급 방식	바우처 사업 간 연계 방식으로 지급하되, 시스템이 구축되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전결제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 사전 수령 없이 이용자가 지원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사후정산을 거쳐 급여를 지급	
적용 범위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의료비, 보조기구 구매,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특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 선택 서비스 제공
관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서울형 개인예산제 사례

- 서울시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올해 8월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 거주형태, 소득, 장애정도 등 조건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100명) 구성
 - 운영방식은 기관 직접서비스(복지관)와 바우처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등 사회보장의 형태이나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처럼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I. 개인예산제 추진 사항

- 바우처 보다는 유연하게 활용하되 당사자(관계자 포함)가 작성한 자기주도계획을 중계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조정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사용하고 1년 단위 정산
- 이후 개인예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장애인 1인 당 100만원까지 사전 지급 후, 체크카드만을 사용하여 문화·여가 및 여행, 취·창업 등 정부 사업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
- 특정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적정 사업 범위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음
- 서울시는 2026년까지 모의적용 예산으로 1억5,600만원을 책정함

〈표 4〉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비교

구분	보건복지부				서울시 시범사업안
모델	1형 (급여유연화)		2형(활동지원유연화)		서울형
지원영역	공공·민간서비스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 인력		이용자 신체 구조나 기능 손상 연관된 모든 서비스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보건의료, 정신건강·심리정서, 보육·교육, 보호·돌봄·요양		일상생활, 신체건강·보건의료, 정신건강·심리정서, 보호·돌봄·요양, 보육·교육		일상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 건강·안전 지원, 교육·자기계발지원, 주거환경 개선, 기타
사용한도	활동지원 월급여 10%		활동지원 월급여 20%		활동지원 월급여 50% (최대 100만원)
시행지역	서울 마포구 (40명)	충남 예산군 (20명)	세종시 (30명)	경기 김포시 (30명)	서울시 (30명)
사업대상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지체·뇌병변 장애인 (활동지원 미이용자 포함)
사용방식	이용자 선부담, 사후정산 환급				현금 선지급, 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
특징	-		기준단가 두배 이내 제한		자부담율 2~10%
시행시기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4년 시범사업 계획
예산	2023년 5억8천만원				1억5천600만원
사업목표	2026년 사업화				
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한국사회보장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 복지관 등 지원기관

*자료 : 김은희(202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작부터 '삐걱'". 소셜포커스 2023. 6. 22.

II.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이용자 지원방식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개인예산제 적용 대상 사회서비스 분야⁴⁾

- ▶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이용자 지원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는 모두 바우처 방식으로 월 한도액이 제공되는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장애인은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
 -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대상 가장 큰 범위의 사업 영역으로 대상적격 판정을 통해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갱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음
 - 서비스 이용은 시군구가 지정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를 통해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높은 점수일수록 구간별 월 급여 한도액을 결정하게 됨
 - 1구간은 465점 최대 점수로 월 한도액이 7,475,000원으로 책정되며 각 구간마다 30점의 점수차와 약 40여만원의 급여의 등간이 존재함
 - 구간은 465점인 1구간부터 42점~75점 사이 15구간까지로 나뉨
 - 모의적용에서는 활동지원 평균 급여량을 월 202만원으로 책정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범위, 지원체계 마련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힘
 - 최종증발달장애인의 경우 월74만7천원(총 448만4천원) 범위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모의적용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 확대를 추진⁵⁾
-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 성인발달장애인(18세~65세 미만)을 대상으로 낮시간을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사업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은 이용자가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소그룹으로 제공기관 및 외부기관을 통해 주간활동에 참여
 -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사업별 소개 참조 (2023. 10. 현재)

5) 이재상(2023). "한국형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 방안". 미디어생활 2023. 6. 9.

II.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적용 방식

〈표 5〉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적용비용과 시간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요금	100%	80%
시간당	15,570원	12,450원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132시간	176시간
장애인활동지원	-	△22시간
총급여량	+132시간	+154시간

* 주: 서비스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서비스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가 허용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미있는 여가활동과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며,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에 일정부분 돌봄을 담당하여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함
 - 대상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이며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만 18세가 도래하여 서비스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는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자격을 갱신
- 서비스 기준단가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와 동일한 15,57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없음
- 서비스 방식은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를 지급하며 제공기관에 따라 제공기관 직접제공형과 학교연계형이 있음

〈표 6〉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비용과 시간

그룹 구성인원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금	100%	90%	80%
시간당	15,570원	14,010원	12,450원
그룹전체	31,140원	42,030원	49,800원

- 사회서비스 연계형 개인예산제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위와 같으며 당초 예정한 120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하고자 함
 - 그러나 복지부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연구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장애인 수는 4개 지자체에서 50명에 그침

II.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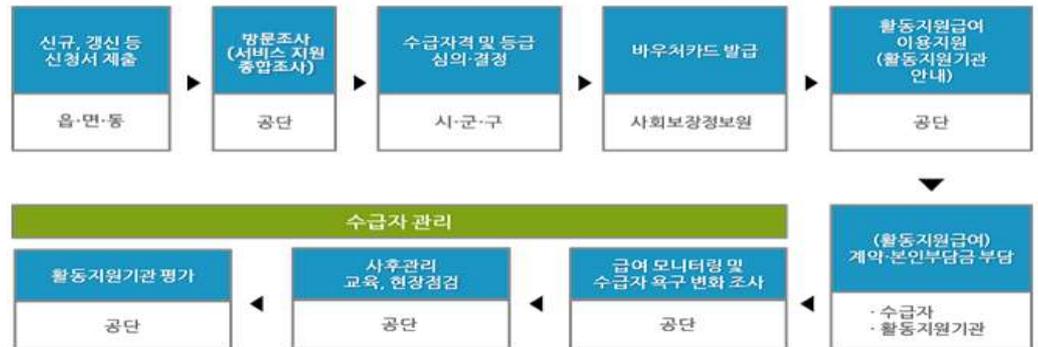
장애인 개인예산제
절차는 구매자 권리
보장이 중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적용 절차 : 서비스 전 과정에서 구매자 권리가 전제

▶ 장애인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기존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와 비교하면 개인예산제 이용모형은 신청절차 이외에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단계가 필요해짐

〈그림 1〉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자료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 전제조건은 욕구조사에서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의 서비스 구매자로서 소비의 권리 보장이 필요함
 - 사람중심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표준 사정도구의 개발이 있어야 함
- 특히, 장애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 측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중요한 절차가 됨
 - 욕구의 평가는 급여량의 평가가 포함되며 성인발달장애인과 청소년장애인 등 대상에 따라 다르게 욕구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하는 기관도 다르게 필요함
-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까지의 권한을 부여할 전달체계 지정
 - 계획수립 단계에는 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욕구, 개인 예산 총 급여량, 서비스 이용계획, 서비스 이용 방식 등을 계획하고 심의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함

II.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표 7〉 개인예산제 이용절차

구분	내용		
신청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 장애인(소득수준 무관) - 거주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3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제외	
	신청인	-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욕구평가	급여량 평가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 서비스	
↓			
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시군구 사회서비스팀(가칭) 신설 - 이용자 및 가족 또는 옹호인 관여 -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 - 계획 포함 내용: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 개인예산 총 급여량, 서비스 이용계획, 서비스 이용 방식, 본인부담금(해당되는 경우)	
	계획 심의	시군구 개인예산심의위원회(가칭) 신설 및 전담	
↓			
이용	이용 모형	공공관리	- 현행 활동지원제도와 유사 - 시군구가 예약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에게 지급
		자기관리	-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명한 사람이 예산을 지급받아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과 분리된 기관이 비용정산과 행정 절차 지원
↓			
성과 평가	계획 평가	시군구 사회서비스팀	
	전체 사업 평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 자료 : 이한나 외 (2021). 『개인예산제 운영 모형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계의 입장 : 서비스 총량 확충, 다양한 장애유형 고려 주장

▶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총량 부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

-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는 모의적용에 따라 개인예산제를 쓰면 기존에 받던 활동 지원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⁶⁾
 - 지금도 활동지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데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
- 제공기관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⁷⁾
 - 특히,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담당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

6) 한겨레(2023). "장애인 필요 서비스 선택 '개인예산제' 첫 발...복지 확충 계획은 빠졌다". 2023. 3. 10.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인포그래픽 "보통의 삶을 누릴 권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개인예산제 도입에 앞서 서비스의 총량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장애계 목소리

II.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서비스(급여) 범위의 확대를 요구

- 급여범위의 확대 기반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초기에는 바우처 서비스에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이용자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자유와 권리는 재원의 기반이 우선되어야 제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산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 <표 8>와 같으나 장애인 개인예산제에서 다루지고 있는 서비스는 극히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이용 서비스 확대가 필요

<표 8> 국내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지원 분야		사업명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교육활동지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이동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사업
이동지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주거지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
주거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보조기기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적용
보건 및 의료		장애인 의료비지원
보건 및 의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발달재활지원		발달재활서비스
고용·직업재활지원		근로지원인서비스
고용·직업재활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주간이용지원	지역사회재활 (바우처)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역사회재활 (제공기관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
가족지원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가족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가족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휴식지원프로그램)

*자료 : 이하나 외 (2021). 『개인예산제 운영 모형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평가하고 지원계획 수립, 승인에 참여할 수 있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장애인 지출이 OECD 평균인 2.14%의 3분의 1수준인 0.72%라며 개인예산제를 위한 예산 확대 없이 활동지원 예산을 활용하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지적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1조9,919억 원이고, 서비스 대상자는 14만6천명으로 한국의 예산은 스웨덴의 약 63% 수준에 그침
 - 개인예산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예산 총량의 확대와 더불어 복지서비스를 판정할 공적체계, 서비스 감독기관이 필요

8) 최은솔(2023).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전장연은 왜 반대하나”. 뉴스톱 2023.3.14.

II.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서비스 방식 등에서
시각장애인 및
소수장애인의 요구
반영이 부족

▶ 다양한 장애 유형과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함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활동지원 급여를 쓰는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모델이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⁹⁾
 -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증장애인은 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그들의 의견과 욕구 반영이 어려움
 - 활동지원 급여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있는 이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서비스를 대신 사용하는 부담이 존재
 - 활동지원 등급별로 다르게 비용을 쓸 수 있지만 서비스 계약이나 구매가 장애인 당사자의 몫이라는 한계가 있음
 - 예산사용의 증빙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맡긴다면 시각장애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서비스 양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많고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과 그 밖의 소수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
 - 경기도의 경우 심한 장애인 수를 보면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수가 비율이 높으며 시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실제로 개인예산제 적용을 조속히 받아야 할 유형의 장애인이 존재함

〈표 9〉 경기도 장애인 유형별 인구 (2022년 말 현재)

(단위 : 명)

장애유형	심한 장애인 수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	합계
지체장애	49,449	214,825	264,274
청각장애	18,959	67,731	86,690
뇌병변	32,554	22,502	55,056
시각장애	9,399	45,517	54,916
지적장애	48,448	0	48,448
신장장애	19,113	6,772	25,885
정신장애	19,960	186	20,146
자폐성장애	10,284	0	10,284
언어장애	2,577	2,885	5,462
간 장애	173	3,690	3,863
장루, 요루	364	3,576	3,940
뇌전증	395	1,026	1,421
심장	334	296	1,270
안면	334	299	633
총 계	212,343	369,305	582,288

* 자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9) 김은희(202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작부터 '삐걱'". 소셜포커스 2023. 6. 22.

서비스 범위 확대,
전달체계 점검,
광역단위의 품질관리
체계 마련

서비스의 유형과 범위의 확대 필요

- ▶ 장애인의 '선택권' 행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서비스 총량 확대, 급여량 충족
 -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현황을 검토하고 지원 분야에 따라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사업을 파악
 - 그러나 서비스 확대는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모의 적용 및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소수장애인을 고려한 사업의 확장 필요
 - 장애유형별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수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유형별 서비스가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 지자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인프라 준비와 서비스 제공량 할당 필요
 -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제공기관의 도시집중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특성에 따른 도(시군구)비 지원 등 서비스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

서비스 선택 과정과 지원 전달체계를 진단

- ▶ 서비스의 각 단계별 지자체의 참여에 따른 변화 수용정도를 확인
 - 현재의 제공기관 지원방식(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 지원방식(바우처 서비스)을 개인예산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전달체계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함
 - 욕구 및 급여량 평가, 계획수립과 심의, 이용모형에 따른 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 등 각 단계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조율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접수처를 읍면동으로 할 때 업무량 조정, 개인별 계획 수립에서의 심의기구와 기준, 평가 단계에서의 성과에 대한 정의 등도 준비되어야 함

서비스 품질 보증 및 개선을 위한 광역단위의 품질관리 체계 마련

- ▶ 개인예산제를 통한 서비스 제공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절차에 대한 평가, 제공기관 및 인력의 관리가 중요
 - 서비스 계획단계부터 지자체가 참여하고 성과 평가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자체 평가와 품질관리가 요구됨
- ▶ 서비스 품질관리의 역할을 광역지자체 내에 두고 기존의 전달체계와 인력의 역량을 발휘하여 서비스 질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
 -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과 프로그램에 의존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존재
 -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인력에 대한 역량 검증을 위한 자격관리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함